

VI. 보험회사 리스크 공시제도의 운용방안

1. 기본방향

가. 리스크 공시제도의 단계적 운용

리스크 공시가 필요한 이유로는 시장규율 확립 및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수준의 제고 등을 들 수 있다. 시장규율이 확립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① 시장참가자들의 감시 유인이 존재하고, ② 시장참가자들이 리스크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③ 효율적인 금융시장이 존재하고, ④ 충분한 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으며, ⑤ 전달하는 정보의 충실화를 위해 회계제도 및 지배구조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표 VI-1> 리스크 공시의 기본적 인프라

	인프라 형태	세부 내용
시장규율이 작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리스크 감시유인 존재	보험계약자, 주주, 감독당국
	리스크관리에 대한 이해력	리스크 인식, 평가 및 비교 능력
	충분한 이해관계자 존재	다수의 계약자, 투자자, 채권자
	효율적인 금융시장 존재	자발적인 리스크 공시를 통해 리스크 프리미엄 감소
	회계제도정비 등	공정가치회계제도

리스크 공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볼 때 선진금융시장에서는 시장규율이 원활히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우리나라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주식소유가

소수에게 한정되어 있고, 자본조달 측면에서도 채권발행에 대한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리스크 공시를 둘러싼 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리스크 공시의 선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리스크 공시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식과 시장 환경이 변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리스크 공시제도의 운용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측면에서 <표 VI-2>와 같은 방향으로 리스크 공시제도를 단계적·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검토될 수 있다. 리스크 공시를 둘러싼 국내 감독정책 및 국제적인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단계(2006~2007년), 제2단계(2008~2010년), 제3단계(2011년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부합하다.

먼저 제1단계(2006~2007년)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리스크 공시체계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즉 경영공시상의 재무상황 중 책임준비금 평가에 대한 정보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부문의 내용을 확충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단계(2008~2010년)에서는 RBC제도 및 RAAS제도 등과 같은 리스크 중심의 보험감독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시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리스크 중심 보험감독정책과 상호 연계되는 리스크 공시체계의 개선이 더불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2011년 이후)에서는 신BIS협약이 이미 시행되고 이에 기초한 Solvency II가 적극 추진됨으로써 보험산업에도 국제적인 수준의 리스크 공시체계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공시제도를 선진화해야 할 것이다.

<표 VI-2> 리스크 공시체계의 단계별 추진기준 및 상황

추진 단계	제1단계 (2006 ~ 2007년)	제2단계 (2008 ~ 2010년)	제3단계 (2011년 ~)
기준	현 상태 지속	리스크 감독정책 시행	Solvency II의 제정 완료
여건	현행 경영통일공시 충실화 필요	RBC 및 RAAS제도의 도입 및 실질적 적용	리스크 공시의 국제적 정합성 부합 요구

나. 국제적 추세에 부합한 리스크 공시

리스크 공시 관련 국제감독기구 및 선진사례의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감독기구는 리스크 중심의 감독과 시장규율 강화 차원에서 리스크 공시의 강화를 권고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국제감독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리스크 공시 요건은 범위가 매우 방대하고, 수준이 매우 높아서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시장규율의 강화 차원에서 질적 공시와 양적 공시간 균형,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정책과 목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각종 리스크관리정책 및 관리모형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요 가정 및 불확실성 등에 관한 충실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감독기구의 리스크 공시 요구가 중소형보험회사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리스크 공시의 국제적 요구 수준은 점점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Citi Group, ING, AIG, Sun Life Financial 등의 리스크 공시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이들 금융회사는 주로 사업보고서를 중심으로 경영상태 및 리스크 관련 사항을 공시하고 있으며, 리스크 공시 수준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전반적으로 은행과 증권사가 보험회사보다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의 공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금융회사의 리스크 공시 수준은 점차 높아져 국제감독기구의 권고안과도 상당히 근접한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주로 사업보고서의 MD&A부문에서 전체적인 리스크관리 목적과 방법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non-GAPP 재무지표일지라도 보험업의 성과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있다.³⁷⁾

우리나라도 리스크 공시의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리스크 공시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데, 리스크 공시의 국제화는 크게 ① 자본 및 리스크 익스포져 공시 ② 질적 및 양적 공시 중심의 공시 등 두 개의 틀 하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VI-3> 국제감독기구의 리스크 공시 지침 및 권고

국제감독기구	리스크 공시의 지침 및 권고안
신BIS협약	해당 금융기관의 자본, 리스크 익스포져, 리스크평가절차와 자본적정성에 대한 중요 정보 제공
합동실무작업반	양적 공시와 질적 공시간 균형, 리스크 익스포져에 대한 정보 공시
IAIS	재무상태, 재무성과, 리스크 익스포져 및 관리방식, 회계정책 정보

다. 리스크 공시의 유용성 제고

현행 국제감독기구의 리스크 공시 권고안을 보면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은행 및 증권사 수준 또는 그 이상의 리스크 공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일부 선진 보험회사의 경우 시장 및 신용리스크에 대한 공시 수준을 은행 및 증권사 수준으로 공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증권사 및 은행과 보험회사간의 리스크성격 및 특성이 상이한 상태에서

37) 유럽보험사의 내재가치, Sun Life의 이원분석 공시 등이 해당됨.

다른 산업에서 요구하는 공시수준을 넘는 과도한 공시는 타 금융권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중복된 리스크 공시는 방대한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효과를 줄 수는 있으나, 정보 제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 유용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리스크 공시의 효과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불합리한 공시 내용은 자칫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정보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제도 운용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① 과도한 공시 지양, ② 불합리한 공시 탈피, ③ 보험회사의 성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리스크 공시의 유용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리스크 공시제도가 보험계약자, 주주 및 채권자 등 시장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정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용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리스크 공시의 범위 및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 세부방향

가. 공시원칙

합동실무작업반(MWG)에서는 공시의 목적을 시장규율을 촉진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켜 자원의 적정배분을 유도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한 공시원칙은 양적 공시와 질적 공시간 균형, 금융기관의 내부리스크 평가 및 관리방법과 일관된 내용을 공시할 것 등이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에서는 보험회사가 공시해야 할 정보로서 재무상태, 재무성과, 리스크 익스포져 및 관리방식, 회계정책과 관련된 사항, 경영 및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다.

우리 보험회사의 공시원칙 역시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규율을 촉진시킨다는 대전제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공시원칙의 달성을 위해서는 현행 양적 공시 위주에서 탈피하여 질적 공시를 강화하고, 손익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요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에 대한 측정방법 및 결과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리스크중심 감독정책의 변화로 RAAS제도 등이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보험회사의 리스크 익스포저를 보여주는 양적 공시도 중요하지만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어느 정도 인가를 보여주는 질적 공시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므로,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련 질적 정보 역할은 점진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적 공시 편중의 리스크 공시체계에서 양적 및 질적 공시 균형의 리스크 공시체계로 전환이 요구된다.

따라서, 보험회사 리스크 공시의 일반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운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은 선진사례와 큰 격차가 존재하며, 국제감독기구의 권고수준과는 더욱 더 큰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점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추진되는 리스크중심 감독정책 및 Solvency II의 pillar 3 제정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리스크 공시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보험회사 특성에 부합한 리스크 공시 수준 및 범위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나. 공시수준 : 단계별 운용 방안

여기에서는 리스크중시의 감독정책 변화 및 우리나라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리스크 공시 운용방안을 3단계로 구분하여 거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리스크 공시 수준에 대한 세부방향 제시는 III장과 IV장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며 세부적으로는 ① 자기자본 내역 및 자본적정성 공시, ② 신용리스크 공시 ③ 시장리스크 공시 ④ 운영리스

크 공시 ⑤ 책임준비금 추정방법 및 보험리스크 공시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리스크 공시 수준의 제시는 현 단계인 제1단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제감독기구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리스크 공시 수준을 종합적으로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제2단계 및 제3단계 등 중장기적 측면에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첫째, 자기자본 내역 및 자본적정성 공시 방향은 <표VI-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자기자본 내역의 경우 제1단계 및 제2단계에 걸쳐 자본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질적 정보의 강화가 요구되지만, 신종자본증권 및 하이브리드자본과 같은 보완자본에 대한 질적 공시는 제3단계인 2011년 이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자기자본 내용 중에서 자본 항목별 금액에 대한 양적 공시는 RBC제도 등과 같은 리스크중시 감독정책이 시행되는 2008년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반해 자본적정성 공시의 경우 자본적정성 평가방법에 관한 설명은 질적 공시 차원에서 제2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Solvency II가 도입되는 제3단계에서는 요구자본이 최저자본³⁸⁾과 목표자본(target capital)³⁹⁾으로 이원화되기 때문에, 자본적정성 공시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 보험회사의 자본상태가 최저자본은 초과하였지만, 목표자본에 미달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공시될 경우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시장반응이 나타날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감독당국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어려움이 더 가중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제3단계에서의 자본적정성 공시는 감독당국에서 요구하는 최저자본과 내부모형에 의해 산출된 경제적 자본을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8) 감독 측면에서 요구되는 최소 자본수준

39)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한 리스크를 감당하기에 적절한 자본수준

<표 VI-4> 자기자본내역 및 자본적정성의 단계별 공시방향

구분		공시내용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자기 자본 내역	질적	- 자본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정보		-신종자본증권, 하이브리드자본 등 보완자본에 대한 공시 확대
	양적	-	-기본자본 항목별 금액	-보완자본 항목별 금액
자본 적정 성	질적	-	-자본적정성평가방법	-
	양적	-	-법정요구자본 총액	-감독 목적의 최저자본(리스크유형별) -내부모형에 의한 경제적 자본

둘째, 신용리스크에 대한 공시는 1단계 및 2단계에서 상당부분을 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험리스크와 달리 신용리스크 및 시장리스크는 2000년대 들어 측정이론 및 방법이 정교화되었으며, 측정시스템이 구현되어 실무적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현행 경영공시기준의 내용을 충실화하여 신용리스크 측정, 관리방법 및 리스크 익스포저에 대한 내용을 공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포트폴리오의 잔여만기별 익스포저 분포, 부실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 산업별·지역별 익스포저의 분포, 신용등급별 익스포저 분포 등과 같은 항목에 대한 양적 공시가 요구된다. 또한 질적 측면에서는 신용리스크관리 관련 자본배분, 한도설정, 관련 자산의 평가방법, 재보험사의 신용도 등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 만약 Solvency II가 구현되어 보험회사가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경우, 내부모형의 사용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승인받은 내용(내부등급체계와 내외부 등급간의 관계 등)을 공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VI-5> 신용리스크의 단계별 공시방향

	공시 내용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질적 공시	-신용리스크관리 정책(자본배분, 한도설정 등) -관련 자산의 평가방법 등 -출재 리스크		-내부모형 사용시 모형에 대한 설명
양적 공시	-만기구조별 익스포져 -대손충당금 변동 사항 -산업별·지역별 익스포져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등		-최저요구자본 -경제적 자본

셋째, 시장리스크의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신용리스크와 마찬가지로 1단계 및 2단계에서 상당수준의 리스크 공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경영공시 내용의 충실도를 높여 트레이딩 목적의 자산에 대한 시장리스크 측정·관리방법, 시장리스크 익스포져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한다. 자산-부채미스매칭리스크에 대해서도 2단계에서 질적 공시를 하도록 한다.

<표 VI-6> 시장리스크의 단계별 공시방향

	공시 내용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질적 공시	-시장리스크관리 정책(방법론, 모델특성 등) -변동성 측정 방법(stress testing, 민감도 등) -검증방법(back testing) -ALM 관리 방법 등		-내부모형 사용시 모형에 대한 설명
양적 공시	-연말 VaR -최고, 최저, 평균VaR -사후검증 결과에 대한 분석 -예측값과 실제값 비교 등		-최저요구자본 -경제적 자본

양적 공시 내용으로는 시장리스크의 요구자본량, 연간 최고, 중간, 최저 VaR 값, 연말 VaR값, 사후검증 결과 이상치에 대한 분석, 예측값과 실제값의 비교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질적 정보로는 시장리스크 측정 방법론, 측정모델의 특성, stress testing·민감도분석 등 변동성 측정방법, 검증방법(back testing) 등에 대한 설명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신용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시장리스크도 Solvency II에 의해 내부모형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승인받은 내부모형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여 시장리스크관리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운영리스크에 대한 공시는 현재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보험회사의 운영리스크는 충분한 계량적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운영리스크는 지급불능과 연관된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1단계 및 2단계에서 운영리스크관리의 프로세스와 더불어 관리방법론 등에 대한 질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운영리스크 관련 공시부분이 상대적으로 여타 다른 리스크 공시 부분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운영리스크 공시부분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지는 것이 요구된다.

<표 VI-7> 운영리스크의 단계별 공시방향

	공시 내용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질적 공시	-운영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 -운영리스크관리 프로세스 및 방법 (준법감시, 정책, 가이드라인) 등		-내부모형 사용시 모형에 대한 설명 -비상계획
양적 공시			

제3단계에서 운영리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 내부모형 사용시 모형에 대한 설명,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운영리스크 감소를 위해 가입한 보험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책임준비금 및 보험리스크의 단계별 공시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채 항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책임준비금에 관한 정보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행 경영공시체계에서는 서식작성 위주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시항목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감독규정상 세부구성 항목별⁴⁰⁾로 정의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산출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다.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부채는 가정에 기반한 추정치이므로 추정방법 및 관련 변수에 따라 손익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 및 정보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재 경영통일공시기준에 의한 공시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에게 보험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재무상황에 대한 공시 중 부채부문을 확충하여 자산부문과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 공시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책임준비금의 추정방법에 대한 설명, 책임준비금 추정에 사용된 경제적·계리적 가정에 대한 제반 정보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현행 준비금 평가방식이 원가법(lock-in)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⁴¹⁾를 적절히 공시함으로써 공시의 유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보험리스크에 대한 공시이다. 보험리스크는 신용리스크 및 시장리스크와 달리 아직까지 논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고유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은행, 증권과의 경쟁 환경을 감안할 때, 금융업종간 불균등한 공시수준을 요구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한 공시권고안에 대해서도 민감한

40) 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 출재보험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41) 사망률, 입원율, 사업비용, 주식수익률, 이자율, 해약률 등

가격정보와 경영기밀사항에 대한 공시 요구는 과도한 수준으로서 타 금융권과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정보를 산출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도 높다. 따라서 보험리스크에 대한 공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리스크 중심 감독체계가 확립되고, Solvency II가 도입된 3단계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리스크의 질적 공시 측면에서는 보험리스크관리 목적, 정책,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중요 가정이 도출되는 프로세스 및 기타 불확실성에 관련된 사항 및 가정들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설명도 바람직하다. 또한, 변액보험 등과 같이 최저보증이 내재된 상품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내재파생상품에 대한 공시도 요구된다. 또한, 가격설정, 위험률, 준비금적정성 등에 대한 질적 공시도 요구된다.

양적 공시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의 손익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계리적 가정⁴²⁾의 변동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민감도분석 결과를 공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회사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 내 재가치기준에서와 마찬가지로 공통방식⁴³⁾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2) 사업비, 유지율, 연금사망율, 입원율, 일반사망률 등

43) 사업비율 $\pm 10\%$, 해약률 $\pm 10\%$, 연금사망률 -10% , 사망률 및 입원률 $+10\%$
변동이 손익에 미치는 효과

<표 VI-8> 책임준비금 및 보험리스크의 단계별 공시방향

	공시 내용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책임준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준비금 추정방법에 대한 정보 -책임준비금 추정에 사용된 경제적·계리적 가정(이자율, 사망률, 사업비율, 주식수익률, 해약률 등)에 대한 설명 		
보험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모형 사용시 측정모형에 대한 설명 -가격설정, 준비금적정성 -보험리스크경감방안(재보험 등) -민감도분석 -내재파생상품 관련 리스크 -최저요구자본 -경제적 자본 		

다. 공시주기 및 요건

공시의 주기는 장기적으로 리스크관리 목적과 원칙, 보고시스템 및 정의와 같은 질적 공시를 제외하고는 반기(6개월 기준)으로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자기자본 내용은 분기(3개월 단위)별로 공시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리스크 익스포져에 대한 정보나 다른 항목이 급변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분기별(3개월 단위)로 공시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시요건 측면에서 이사회 등에서 승인한 공식적인 공시정책 마련이 요구되며 공시 프로세스에 관한 내부 통제를 갖추고 공시의 검증과 빈도를 포함하여 공시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 리스크 익스포져, 리스크 평가절차와 자본 적정성에 대한 중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규율을 촉진하는데 공시목적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시의 내용 등은 최고

경영자와 이사회에서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법과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공시형식

리스크 공시의 형식은 현재 어떠한 프로세스에 의해 리스크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기존 리스크 공시 방법 등)와 효율적인 리스크 공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리스크 공시 방법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리스크 공시의 방식은 ① 경영통일공시기준에 의한 공시 ②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한 공시 ③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①에 대한 공시는 생·손보협회의 자율공시체계 방식을, ② 및 ③에 대한 공시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체계 방식을 채택·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의 리스크 공시는 비교가능성, 유용성, 객관성 등과 같은 리스크 공시 원칙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VI-9> 공시방법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현황	개선방안
대상	- 정기 경영공시: 경영현황 - 수시 경영공시	-점진적으로 경영통일공시와 사업보고서 내용을 통합하여 간편성과 효율성 제고 -사업보고서에 의한 리스크 공시 문제는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이 필요
형태	- 자율공시(비정형화된 공시)	-실효성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제시는 바람직하지만, 최저 수준 이상의 자발적 공시 유도

리스크 공시는 현행 경영통일공시에 의한 정기경영공시와 증권거래법에 의한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내용을 통합하여 단일한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효율성과 간편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선진

국처럼 사업보고서에 의한 리스크 공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이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리스크 공시 형태 측면에서는 현행처럼 자율공시체계를 지향하되, 리스크 공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하며,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보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공시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향후과제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리스크 공시는 국제감독기구의 공시내용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① 리스크관리 부문의 공시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② 양적·질적으로 공시내용이 취약하고 ③ 리스크 공시의 유용성 또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 리스크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실행이 감독당국 중심으로 이루어진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보험회사들이 경영성과의 공시에 대한 자발적 유인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기준을 모범규준(best practice)으로 간주하여 최고 수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이와 같은 우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공시제도 운용에 대한 감독당국의 영향력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및 향후 변동성에 관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함으로써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고, 시장규율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보험회사 리스크 공시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보험회사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리스크 공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선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영통일공시기준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삭제와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무상태에 대한 균형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장기적 측면에서 RBC 및 RAAS 시행과 같은 감독정책의 변화 및 Solvency II 체계 확립 등과 같은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험회사의 리스크 공시를 선진화할 수 있는 스케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 및 시장에서의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자산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스케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일반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보험회사의 경영정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공시의 내용을 쉽게 시장참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에 관한 교육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록, 우리의 경우 감독당국 중심으로 리스크관리 체도가 도입되어 정착되고 있지만, 리스크 공시의 주체는 보험회사임을 감안할 때 리스크 공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선진금융회사들은 감독당국의 요구사항을 최저 수준으로 보고, 추가적인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소시키고 있다.

향후 우리 보험회사들도 글로벌 전략을 추진하고, 국제시장에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재무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시가 선결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동안 대형 보험회사의 경우 신용리스크 및 시장리스크 관리에 대해 상당한 투자를 하였고, 이를 경영활동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하는 자세 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보험회사는 공시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정책의 실행과 평가를 위해 공시위원회를 두는 등 관련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우리 보험회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시장에 공시하고 이를 통해 리스크관리 체제를 선진화하고, 시장규율을 촉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